

의안번호	제 30 호	의 결 사 항
의결 년월일	2004. 9 . .	

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 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사 천 시 장
제출년월일	2004. 8. 4.

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
----------	----

제 출 일 자	2004. 8. 4
제 출 자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의 이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찬조금 수입 기금조성 재원 삭제 (안 제3조 및 제10조)
- 융자금 이자율 하향 조정 (안 제5조제3항)
 - 이율 : 연5% → 3%, 연체이율 : 연15% → 9%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따로붙임
- 나. 타시군 생활안정자금 이율 및 정책자금 이율 비교 : 따로 붙임
-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라. 합 의 : 기획담당관실

마. 기 타

- 1) 신·구 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 2) 입법예고 (2004. 6.14 ~ 7. 9)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융자금의 회수액
3. 기금운용 수익금

제5조제3항중 “연 5퍼센트” 를 “연 3퍼센트” 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중 “연 15퍼센트” 를 “연 9퍼센트” 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상환금, 기금이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기금조성)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을 조성한다. 다만 저소득주민생활안정 등 기타 사업에 따른 찬조금 수입도 이를 기금으로 총당할 수 있다.</p> <p>제5조(용자금액 등) ① ~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 5퍼센트로 하되 거치기간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된 뒤에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p> <p>제10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기부금, 상환금, 기금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② (생략)</p>	<p>제3조(기금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용자금의 회수액 3. 기금운용 수익금</p> <p>제5조(용자금액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연 3퍼센트----- ----- ----- 연 9퍼센트----- ----- -----.</p> <p>제10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상환금, 기금이자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p>

관계 법령 발췌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라 함은 환영금품·축하금품·찬조금품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반대급부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법인·정당·사회단체·종친회·친목단체 등이 정관이나 규약 또는 회칙등에 의하여 그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일시금·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각출하는 금품
 - 나. 사찰·교회·향교·기타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로부터 각출하는 금품
 - 다.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정당·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등이 소속원 또는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각출하는 금품
 - 라. 학교기성회·후원회·장학회 또는 동창회등이 학교의 설립 또는 유지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각출하는 금품
2. “기부금품의 모집”이라 함은 서신·광고·기타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모집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모집종사자”라 함은 모집자로부터 지시·의뢰를 받아 기부금품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국가등 기부금품 모집·접수제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또는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시군 생활안정자금 이율, 융자한도액 및 정책자금 이율 비교

□ 타시군 비교

□ 정책자금

상 품 명	이 자	연체이자	비고
저소득생업자금	연4%	금융기관 여신이자율(14%)	
장애인자립자금	연4%	"	
저소득전세자금	연3%	8.5%	
농업인후계자자금	연4%		
농기계구입자금	연3%		
새마을소득사업운영	연3%		
새마을특별지원사업	무이자		
식품진흥기금	2%		
농어촌진흥기금	2%		
택지조성사업자금	무이자		
화장실개량사업자금	"		
태양열이용시설용자금	2%		

□ 기타 참고자료

- 민법 제379조 법정 이율 : 년5%
- 일반대출금 연체이율 : 최저 15%~최고 19%

시군명	조례명	이자율	연체이자율	융자한도액	보증인
창원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5%	15%	10,000천원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 1인
마산시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5%	15%	10,000천원	10,000원 이상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1인
진주시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3%	6%	10,000천원	진주시 거주 세대주로서 재산세 5,000원 이상인자 1인
진해시	기초생활보장및 생활안정 기금설치운영에 관한조례	3%	수탁금융기관 의가계일반대 출연체이자율	10,000천원	진해시에 거주하고 10,000원 이상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이 있는자 1인
통영시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 기금운영관리조례	3%	"	10,000천원	통영시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으로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5,000원
사천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5%	15%	5,000천원	5,000원 이상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이 있는자 1인
김해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3%	10%	10,000천원	5,000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 1인
밀양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5%	15%	10,000천원	10,000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 1인
거제시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 기금운영관리조례	3%	수탁금융기관 의가계일반대 출연체이자율	5,000천원	금융기관이 정하는 연대보증인
양산시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 기금운영관리조례	3%	"	10,000천원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의령군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 조례	5%	15%	5,000천원	5,000원 이상의 재산세납부 1인
함안군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 기금운영관리조례	5%	수탁금융기관 의가계일반대 출연체이자율	10,000천원	수탁금융기관의 내규에 정함
창녕군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 조례	5%	15%	5,000천원	5,000원 이상의 재산세납부 1인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 운영조례	5%	12%	20,000천원	2인이상의 연대보증,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적담보외에 물적담보 요구

시군명	조례명	이자율	연체이자율	융자한도액	보증인
남해군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 기금운영관리조례	4%	수탁금융기관 의가계일반대 출연체이자율	10,000천원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산한 1만원 이상의 납부실적이 있는 자
하동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3%	15%	10,000천원	새마을지도자, 이장중 1인과 읍면장의 추천 5,000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 1인
산청군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 기금운영관리조례	3%	수탁금융기관 의가계일반대 출연체이자율	10,000천원	수탁금융기관의 자치내규
하양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3%	10%	10,000천원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5,000원 이상의